

[정 정 대 비 표]

■ 정정 집합투자기구 및 정정 서류

편	드	명	BNK글로벌월배당ETF담아매달주는증권자투자신탁UH(채권혼합-재간접형)			
정	정	서	류	투자설명서		
정	정	사	유	분배금 지급일 변경		
효	력	발	생	일	2026년 08월 12일	

■ 정정대비표

[간이투자설명서]

항목	정정사유	정정 전	정정 후
[요약정보]			
투자목적 및 투자전략	분배금 지급일 변경	- 이 투자신탁은 해외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인 "BNK글로벌월배당ETF담는증권모투자신탁(채권혼합-재간접형)"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증권집합투자기구입니다. - 이 투자신탁은 모자형 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으로서,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신탁재산의 60% 이상을 투자하는 모자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. - 이 투자신탁은 환헤지형 자투자신탁으로 환율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원/달러 기준으로 헤지를 수행합니다. - 월분배금 지급에 관한 사항 - 분배금 :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자산들의 추정 수익을 감안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지급하기로 결정한 금액 - 분배기준일 : 최초설정일 익월부터 매월 20일 다만, 매월 20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매월20일의 익영업일로 합니다. - 분배금지급일 : <u>분배기준일로부터 6영업일에</u> 분배금을 지급합니다. (이하 생략)	- 이 투자신탁은 해외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인 "BNK글로벌월배당ETF담는증권모투자신탁(채권혼합-재간접형)"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증권집합투자기구입니다. - 이 투자신탁은 모자형 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으로서,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신탁재산의 60% 이상을 투자하는 모자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. - 이 투자신탁은 환헤지형 자투자신탁으로 환율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원/달러 기준으로 헤지를 수행합니다. - 월분배금 지급에 관한 사항 - 분배금 :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자산들의 추정 수익을 감안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지급하기로 결정한 금액 - 분배기준일 : 최초설정일 익월부터 매월 20일 다만, 매월 20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매월20일의 익영업일로 합니다. - 분배금지급일 : <u>분배기준일로부터 2영업일에</u> 분배금을 지급합니다. (이하 현행과 동일)

[투자설명서]

항목	정정사유	정정 전	정정 후
[요약정보]			
투자목적 및 투자전략	분배금 지급일 변경	이 투자신탁은 해외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인 "BNK글로벌월배당ETF담는증권모투자신탁(채권혼합-재	이 투자신탁은 해외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인 "BNK글로벌월배당ETF담는증권모투자신탁(채권혼합-재

		간접형"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증권집합투자기구입니다. • 이 투자신탁은 모자형 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으로서,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신탁재산의 60% 이상을 투자하는 모자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. • 이 투자신탁은 환헤지형 자투자신탁으로 환율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원/달러 기준으로 헤지를 수행합니다. • 월분배금 지급에 관한 사항 1) 분배금 :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자산들의 추정 수익을 감안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지급하기로 결정한 금액 2) 분배기준일 : 최초설정일 익월부터 매월 20일 다만, 매월 20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매월20일의 익영업일로 합니다. 3) 분배금지급일 : <u>분배기준일로부터 6영업일에</u> 분배금을 지급합니다. (이하 생략)	간접형"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증권집합투자기구입니다. • 이 투자신탁은 모자형 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으로서,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신탁재산의 60% 이상을 투자하는 모자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. • 이 투자신탁은 환헤지형 자투자신탁으로 환율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원/달러 기준으로 헤지를 수행합니다. • 월분배금 지급에 관한 사항 1) 분배금 :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자산들의 추정 수익을 감안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지급하기로 결정한 금액 2) 분배기준일 : 최초설정일 익월부터 매월 20일 다만, 매월 20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매월20일의 익영업일로 합니다. 3) 분배금지급일 : <u>분배기준일로부터 2영업일에</u> 분배금을 지급합니다. (이하 현행과 동일)
제2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		
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	-	-	- 2026.08.12: 분배금지급일 변경
9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,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	분배금지급일 변경	가.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(1) 투자전략 - 이 투자신탁은 모자형 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으로서, 미국에 상장된 월배당 ETF를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며, 글로벌 채권, 주식, 대체투자(원자재, 인프라, 리츠 등) 관련 글로벌 상장지수 집합투자기구(ETF) 등에 주로 투자하는 "BNK글로벌월배당ETF담는증권모투자신탁(채권혼합-재간접형)"에 투자신탁재산의 대부분을 투자할 계획입니다. ------(생략)----- 월분배금의 지급사항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이익분배와는 별도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	가.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(1) 투자전략 - 이 투자신탁은 모자형 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으로서, 미국에 상장된 월배당 ETF를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며, 글로벌 채권, 주식, 대체투자(원자재, 인프라, 리츠 등) 관련 글로벌 상장지수 집합투자기구(ETF) 등에 주로 투자하는 "BNK글로벌월배당ETF담는증권모투자신탁(채권혼합-재간접형)"에 투자신탁재산의 대부분을 투자할 계획입니다. ------(현행과 동일)----- 월분배금의 지급사항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이익분배와는 별도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

		익금 또는 이익금을 초과한 분배금(이하 “분배금”이라 한다)을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방법으로 현금 분배할 수 있습니다. 1. 분배금 :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자산들의 추정 수익을 감안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지급하기로 결정한 금액 2. 분배기준일 : 최초설정일 익월부터 매월 20일. 다만, 매월 20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매월20일의 익영업일로 합니다. 3. 분배금지급일 : <u>분배기준일로부터 6 영업일에</u> 분배금을 지급합니다. (이하 생략)	익금 또는 이익금을 초과한 분배금(이하 “분배금”이라 한다)을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방법으로 현금 분배할 수 있습니다. 1. 분배금 :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자산들의 추정 수익을 감안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지급하기로 결정한 금액 2. 분배기준일 : 최초설정일 익월부터 매월 20일. 다만, 매월 20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매월20일의 익영업일로 합니다. 3. 분배금지급일 : <u>분배기준일로부터 2 영업일에</u> 분배금을 지급합니다. (이하 현행과 동일)
14. 이익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	분배금 지급일 변경	가. 이익배분 -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당해 종류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합니다. 다만,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,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합니다. ------(생략)----- ※ 분배금의 지급 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계약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이익분배와는 별도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 또는 이익금을 초과한 분배금(이하 “분배금”이라 한다)을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방법으로 현금 분배할 수 있습니다. 1. 분배금 :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자산들의 추정 수익을 감안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지급하기로 결정한 금액 2. 분배기준일 : 최초설정일 익월부터 매월 20일. 다만, 매월 20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매월 20일의 익영업일로 합니다. 3. 분배금지급일 : <u>분배기준일로부터 6</u>	가. 이익배분 -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당해 종류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합니다. 다만,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,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합니다. ------(현행과 동일)----- ※ 분배금의 지급 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계약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이익분배와는 별도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 또는 이익금을 초과한 분배금(이하 “분배금”이라 한다)을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방법으로 현금 분배할 수 있습니다. 1. 분배금 :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자산들의 추정 수익을 감안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지급하기로 결정한 금액 2. 분배기준일 : 최초설정일 익월부터 매월 20일. 다만, 매월 20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매월 20일의 익영업일로 합니다. 3. 분배금지급일 : <u>분배기준일로부터 2</u>

		<u>영업일에</u> 분배금을 지급합니다. (이하 생략)	<u>영업일에</u> 분배금을 지급합니다. (이하 현행과 동일)
--	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

끝.